

[붙임 1]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개정(안)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김정관 (산업통상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엔지니어링사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이 일부개정(‘25.05.27.)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자구 정비
-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·조사 근거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 승계시 양수인등의 종전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에 대한 확인 의무 및 관련 확인서 발급 내용이 신설되는 등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이 일부개정(‘25.12.02.)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 신설 및 자구 정비

3. 주요내용

- 개정 법률 조문(법 제16조제2항 신설) 관련 자구 수정(안 제27조제1항)
- 개정 법률 조문(법 제21조제2항 각호 신설) 관련 자구 수정(안 제33조제2항)
- 개정 법률 조문(법 제31조제7항) 관련 자구 수정(안 제42조제1항)
- 개정 법률 조문(법 제21조의2 및 제25조제3항 신설) 관련 업무 위탁 내용 추가(안 제56조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의2 신설, 제6호 자구 수정)
- 개정 법률 조문(법 제21조제2항 각호 신설, 제21조제5항·제6항) 관련 자구 수정(안 별표4)

- 개정 법률 조문(법 제21조제2항 각호 신설, 제21조의2 신설 및 제48조 제2항제1호)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및 자구 수정 등(안 별표6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~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6조”를 “법 제16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1조제2항”을 “법 제21조제2항제1호”로 한다.

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법 제31조제5항”을 “법 제31조제7항”으로 한다.

제56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제4호”를 “제5호”로, “신고사항”을 “신고사항 등”으로 한다.

3의2.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·조사

4의2.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 접수 및 확인서 발급

별표 4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및 영업정지 기준(제35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. 다만, 위반행위가 모두 영업정지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영업정지기간(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)에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을 가중하여 처분하되,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- 라. 제2호에 따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가중한 영업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위반사항	해당 법조문	처분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을 한 경우	법 제24조 제1항 제1호	신고 효력상실			
나.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한 경우	법 제24조 제1항 제5호	신고효력상실			
다.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에 위해를 끼친 경우	법 제24조 제1항 제6호	신고효력상실 영업정지	신고효력		
1)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2)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					

망사고 외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		6개월	상실		
3)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하 · 파손·붕괴되거나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등으로 시설물 또는 제작물의 주요 기능·미관 또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하시켰을 때		영업정지 2개월	영업정지 2개월	영업정지 2개월	영업정지 2개월
라.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신고요건에 미달한 경우	법 제24조 제 1 항 제 2 호	경고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4개월	신고효력 상실
마.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거나 <u>30일 이상 휴업</u>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<u>법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</u>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24조 제2항				
1)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거나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<u>법 제21조제2항제3호</u> 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	신고말소			
2) <u>30일 이상 휴업</u> 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<u>법 제21조제2항제2호</u> 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	경고	신고말소		
바. <u>법 제21조제5항</u> 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	법 제24조 제 1 항 제 3	영업정지 6개월	신고효력 상실		

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준 경우	호				
사. <u>법 제21조제6항</u> 을 위반 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 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경우	법 제24조 제 1 항 제 4 호				
1) 금지된 행위를 알선한 경우	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	신고효력 상실	
2)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 한 경우		영업정지 6개월	신고효력 상실		

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[별표 6]

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57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	법 제48조 제1항제1호	150	150	150
나. <u>법 제21조제2항제1호를</u>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	법 제48조 제1항제2호	50	100	150
다. <u>법 제2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</u>	법 제48조 제2항제1호	30	50	<삭제>
라.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	법 제48조 제2항제2호	30	50	80
마. <u>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실태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</u>	<u>법 제48조 제2항제2호의2</u>	<u>30</u>	<u>50</u>	<u>80</u>
바.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	법 제48조 제1항제3호	50	100	150

<u>사.</u>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 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	법 제48조 제2항제3호	30	50	80
<u>아.</u> 법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무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48조 제2항제4호	30	50	80
<u>자.</u> 법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 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 니어링활동을 하게 하거나 엔지니 어링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경우	법 제48조 제1항제4호	200	200	200
<u>차.</u>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서명날인을 한 경우	법 제48조 제2항제5호	50	80	100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시책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<u>법 제16조</u> 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 1. ~ 5. (생략) ② (생략)	제27조(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시책) ① ----- ----- <u>법 제16조제2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33조(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) ① (생략) ② <u>법 제21조제2항</u> 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~ 6. (생략)	제33조(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법 제21조제2항제1호</u> -----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
제42조(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 배상보험 · 공제 가입) ① <u>법 제31조제5항</u> 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및 가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1. · 2. (생략)	제42조(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 배상보험 · 공제 가입) ① <u>법 제31조제7항</u>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② ~ ④ (생략) 제56조(업무의 위탁) ① 법 제44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 4. (생략) <u><신설></u> 5. (생략) 6. 제34조제2호부터 <u>제4호</u>까지의 규정에 따른 <u>신고사항</u>의 유지·관리 ②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56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3의2.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·조사</u> 4. (현행과 같음) <u>4의2.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 접수 및 확인서 발급</u>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<u>제5호</u>----- ----- <u>신고사항 등</u>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통상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	
연 락 처	(044) 203 - 4345